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령안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26. 2. 25.)’의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규정
(안 별표 1 제4호바목(4) 신설)

- 1) 현행 등록기준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에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를 두지 않아 관광객들이 객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들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영업장은 물론 민박 예약이 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소비자인 관광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격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2호가목1))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강화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12) 중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접수대와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으로 한다.

(4) 영업장과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별표 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	--	--	--	--

별표 2 제2호가목1)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 목(4), 같은 호 사목(12)에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	------------	-------------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가) 외의 등록기준에 적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정지	취소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5일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가)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2835